

#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
소병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.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또한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16조).

##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(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⑦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) ①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</u>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·도 식생활 교육 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제16조(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) ① <u>시·도지사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